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소방공무원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
집행계획에 재정적 조치 포함 의무화〉

■ 서왕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759호)

2025. 2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소방공무원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 강구 규정 신설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서왕진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4. 11. 21.
3. 회 부 일 : 2024. 11. 2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,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

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·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소방공무원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 강구 규정 신설

개정안은 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’과 ‘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’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·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·도지사에게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이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·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
<u>②</u>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

	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정적 조치의 집행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집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--	---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(제1조)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관서 식당 등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(제2조제6호¹⁾),

소방청장에게 매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작성하고(제7조제1항)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(이하 “연도별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(제7조제3항)²⁾.

1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6. “복지시설”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소방관서 매점, 식당, 주유소

나. 수련원, 보육시설

다.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

2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

또한, 시·도지사에게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(제8조제1항),

집행계획에는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,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, ③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,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(시행령 제4조제2항3)).

행하여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
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
3.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4.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
5.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
6.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7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(이하 “연도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

제4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급식 여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⁴⁾.

구체적으로, 전국 250개 소방서의 급식 단가 현황을 살펴보면⁵⁾ 1식(食) 당 평균 단가는 4,042원이나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소방서는 1식 당 단가가 7,912원인데 비해 가장 낮은 소방서는 1식 당 단가가 2,800원으로 나타나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소방서와 가장 낮은 소방서 간에는 약 2.8배(5,112원)의 급식 단가 차이가 있고,

공무원 정액급식비 14만원⁶⁾을 일괄 반영해서 비교한 경우에도 각 지

-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
 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 3.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

4) 전국 소방관서 급식 단가 현황은 [참고 1] 참조

5) <표> 2024년도 전국 소방관서 급식단가* 현황에 제시된 단가 I 과 II는 차이가 나타남.
I 과 II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II는 정액급식비 14만원을 일괄 반영한 금액이고 I은 개인별 거출금액**을 바탕으로 작성한 단가라고 설명함.

* 급식비는 주방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제외하고 식자재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정함.

** 정액급식비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월 14만원으로 동일하나, 월급에 포함되어 개별 소방관에게 지급되므로 각 소방서는 식비를 거출하여 급식을 운영하고 있음. 각 소방서 별 거출금액은 최소 7만원, 최대 18만원으로 소방관서마다 상이함.

6)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※ 인사처 소관 법령
제18조(정액급식비)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다만, 공중보건 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, 공중방역수의사, 공익법무관, 재외공무원,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.

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※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
제18조(정액급식비)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.

방자치단체별로 영양사 고용 여부⁷⁾, 식당 운영 방식의 차이⁸⁾로 인해 각 소방서별 1식 단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(평균 4,711원, 최대 7,912원, 최소 2,829원, 편차: 5,083원).

- 7) -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함.
 - 소방청은 집단급식소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총 138개소이며 이 중 영양사가 미배치된 소방관서는 없다고 밝히며, 다만 영양사 고용*에 있어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고용 및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함.

*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138명 고용형태: 공무원 105명, 위탁업체 영양사 13명, 용역 20명

「식품위생법」

제52조(영양사)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(營養士)를 두어야 한다.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

제2조(집단급식소의 범위)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.

- 참고로, 전국 250개 소방서 중 24.9%인 60개 소방서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2024년도 전국 소방관서 영양사 배치 현황>

	영양사 배치			영양사 미배치	계
	소계	집단급식소	기타		
소방관서 수	190	138	52	60	250
%	76.0%			24.0%	100.0

(자료: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처리)

- 8)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서 급식운영은 ① 외부위탁과 ② 자체 급식소 운영으로 구분됨.
 - 자체 급식소의 경우 집단급식소(1회 50명 이상 식사)로 지정된 소방관서와 지정되지 않는 소방관서로 구분이 되며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된 급식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함. 또한 자체 급식소의 경우 조리인력 인건비 또는 부식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음.
 - 외부위탁은 민간 업체의 영양사와 조리인력이 급식을 담당하는 형태로, 직원들의 만족도 및 급식의 효율성(비용 및 인력관리)을 선호하는 시도 또는 조리인력 채용이 곤란한 지역*에서 활용하고 있음.

* ① 교통낙후 지역 ② 장거리로 인한 출퇴근 불편 지역

<2024년도 전국 소방관서 급식단가 현황>

(단위:원)

	평균	최대(A)	최소(B)	A-B
I. 개인별 거출비(최대18만원/최소7만원) 반영 1식 단가	4,042	7,912	2,800	5,112
II. 정액급식비 14만원 일괄 반영 1식 단가	4,711	7,912	2,829	5,083

(자료: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처리)

참고로, 전국 소방관서의 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4개이고,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4곳으로 나타남⁹⁾.

<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조례 등 제정 현황>

	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9개 시도본부)	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(5개 시도본부)
시도	전남, 부산, 충북, 충남, 경기, 전북, 경북, 울산, 인천	대구, 대전, 경남, 제주, 강원

(자료: 소방청)

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집행계획에 식당 등 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한 재정적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

9)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관서 급식 지원 조례의 상세 내용은 [참고 2] 참조

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먼저, 소방관서 내 식당 등 복지시설 설치·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2호¹⁰⁾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임. 다만, 이를 상위법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봄.

참고로 개정안은 복지시설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재정적 조치 사항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, 복지시설에는 식당 외에, 매점·주유소·수련원·보육시설 및 이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(제2조제6호¹¹⁾)과

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

10)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각주 3) 참조

11)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각주 1) 참조

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는 점(제3조제5항¹²⁾)도 개정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다음으로, 소방공무원의 급식비는 대통령령인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제18조)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¹³⁾과 소방공무원의 급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은 시·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¹⁴⁾¹⁵⁾을 고려할 필

12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제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4. 18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13)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※ 인사처 소관 법령

제18조(정액급식비)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다만, 공중보건 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중방역수의사, 공익법무관, 재외공무원,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.

<참고>

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※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

제18조(정액급식비)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.

14) 「소방기본법」

제3조(소방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, 소방안전교육·홍보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의 업무(이하 "소방업무"라 한다)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. <개정 2014.12.3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·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2.10.>

④ 시·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.

요가 있음.

그 밖에, 소방청은 ‘중앙-시도간 소방정책 조정회의(2024.10.18.)’ 및 ‘소방기관 급식 및 상조회 개선 방안회의(2024.11.06.)¹⁶⁾’를 거쳐 2024년 11월 27일에 “시도 소방기관 급식운영 기준 권고안¹⁷⁾”을 각 시도에 통보하는 등 전국 소방관서의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⁸⁾.

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소방공무원이 직무(화재진압·구조·구급활동 및 재난대비 훈련 등 소방 본연의 업무)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, 시·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급식 등 복지시설 설치·운영 관련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 하도록

15)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

제3조(설치 및 운용) ① 시·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,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(이하 "소방특별회계"라 한다)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·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.

16) 전국 소방관서 급식 운영 개선 방안의 상세 내용은 [참고 3] 참조

17) 권고안의 상세 내용은 [참고 4] 참조

18)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, 소방청의 노력 등으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급식 예산은 평균 13.23% 오른 것으로 나타남. 다만, 전체 19개 시도 가운데 한 끼 식사가 4,500원 대인 곳이 7곳으로 조사되는 등 아직 소방관 급식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.

(출처: 채널 에이, 소방관 부실 급식 보니...,

2025.2.5., 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49/0000298781?sid=102>)

하는 책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여 재원확보 책임
성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51

참고1

전국 소방관서 급식단가 현황(월 30식 기준)

(자료: 소방청)

① 정액급식비 14만원 중 개인별 거출(최대18만원/최소7만원) 반영 1식 단가

② 정액급식비 14만원 일괄 반영 1식 단가

※ ①과 ②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②번의 경우 정액급식비 14만원 일괄 반영한 금액이고 ① 개인별 거출금액으로 거출금액에 따라 비용 차등 발생 하며 급식비 산정 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제외하고 식자재 비용만 산정 함.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1	서울	119특수구조단	무	4,587	5,301
2	서울	종로소방서	유	3,454	4,690
3	서울	중부소방서	유	3,157	4,282
4	서울	광진소방서	유	3,959	4,625
5	서울	용산소방서	유	3,502	4,614
6	서울	동대문소방서	유	3,385	4,337
7	서울	영등포소방서	유	3,558	4,506
8	서울	성북소방서	유	3,423	4,580
9	서울	은평소방서	유	3,704	4,204
10	서울	강남소방서	유	2,928	3,866
11	서울	서초소방서	유	3,561	4,637
12	서울	강서소방서	유	3,267	4,556
13	서울	강동소방서	유	3,743	4,443
14	서울	마포소방서	유	3,411	4,464
15	서울	도봉소방서	유	3,430	4,611
16	서울	구로소방서	유	3,197	4,320
17	서울	노원소방서	유	3,885	4,552
18	서울	관악소방서	유	3,170	4,324
19	서울	송파소방서	유	3,562	4,455
20	서울	양천소방서	유	3,280	4,480
21	서울	중랑소방서	유	3,434	4,807
22	서울	동작소방서	유	3,069	4,393
23	서울	서대문소방서	유	3,450	4,600
24	서울	강북소방서	유	3,274	4,301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25	서울	성동소방서	유	3,118	3,984
26	서울	금천소방서	유	3,483	4,316
27	부산	특구단	무	4,333	4,667
28	부산	중부소방서	유	2,860	4,667
29	부산	부산진소방서	유	3,633	4,667
30	부산	동래소방서	유	3,207	4,667
31	부산	북부소방서	유	4,042	4,667
32	부산	사상소방서	유	3,756	4,667
33	부산	사하소방서	유	3,760	4,667
34	부산	해운대소방서	유	3,110	4,667
35	부산	금정소방서	유	3,627	4,667
36	부산	남부소방서	유	3,207	4,667
37	부산	강서소방서	유	3,333	4,667
38	부산	기장소방서	유	3,500	4,667
39	부산	항만소방서	유	3,814	4,667
40	대구	중부소방서	무	2,801	4,626
41	대구	동부소방서	무	2,845	4,563
42	대구	서부소방서	유	2,803	4,089
43	대구	북부소방서	유	2,875	4,242
44	대구	수성소방서	유	2,830	4,264
45	대구	달서소방서	유	2,834	4,413
46	대구	달성소방서	유	2,833	4,367
47	대구	강서소방서	유	2,802	4,369
48	대구	강북소방서	유	2,898	4,317
49	인천	중부소방서	유	3,740	4,667
50	인천	남동소방서	유	3,350	4,667
51	인천	부평소방서	유	3,383	4,667
52	인천	서부소방서	유	3,450	4,667
53	인천	공단소방서	유	3,350	4,667
54	인천	계양소방서	유	3,633	4,667
55	인천	미추홀소방서	유	3,383	4,667
56	인천	강화소방서	유	3,633	4,667
57	인천	영종소방서	유	3,450	4,667
58	인천	송도소방서	유	3,644	4,667
59	인천	검단소방서	유	3,483	4,667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60	광주	동부소방서	유	3,222	4,667
61	광주	서부소방서	유	3,380	4,667
62	광주	남부소방서	유	3,250	4,667
63	광주	북부소방서	유	3,310	4,667
64	광주	광산소방서	유	3,450	4,667
65	대전	동부소방서	유	3,654	4,696
66	대전	둔산소방서	유	3,461	4,628
67	대전	대덕소방서	유	3,184	4,650
68	대전	유성소방서	유	3,852	4,485
69	대전	서부소방서	유	3,869	4,702
70	울산	특수대응단	무	3,009	4,667
71	울산	중부소방서	유	2,833	4,667
72	울산	남부소방서	유	2,808	4,667
73	울산	동부소방서	유	2,833	4,667
74	울산	북부소방서	유	2,800	4,667
75	울산	남울주소방서	유	2,847	4,667
76	울산	서울주소방서	유	2,838	4,667
77	세종	조치원소방서	유	3,767	4,667
78	세종	세종소방서	유	3,889	4,667
79	경기	수원소방서	유	3,546	4,457
80	경기	수원남부소방서	유	4,019	4,600
81	경기	성남소방서	유	3,767	4,667
82	경기	분당소방서	유	4,062	4,571
83	경기	부천소방서	유	4,010	4,509
84	경기	안양소방서	유	3,895	4,515
85	경기	안산소방서	유	3,953	4,667
86	경기	용인소방서	유	5,105	4,550
87	경기	용인서부소방서	무	5,250	4,667
88	경기	평택소방서	유	3,926	4,510
89	경기	송탄소방서	유	3,444	4,667
90	경기	광명소방서	유	4,304	4,496
91	경기	시흥소방서	유	3,617	4,667
92	경기	군포소방서	유	4,341	4,407
93	경기	화성소방서	유	4,040	4,667
94	경기	이천소방서	유	4,050	4,667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95	경기	김포소방서	유	4,543	4,667
96	경기	광주소방서	유	4,477	4,667
97	경기	안성소방서	유	3,917	4,667
98	경기	하남소방서	유	3,742	4,383
99	경기	의왕소방서	유	4,405	4,272
100	경기	오산소방서	유	3,796	4,338
101	경기	여주소방서	유	4,100	4,667
102	경기	양평소방서	유	4,213	4,480
103	경기	과천소방서	유	4,728	4,395
104	경기북부	고양소방서	유	4,054	4,667
105	경기북부	일산소방서	유	4,391	4,667
106	경기북부	의정부소방서	유	5,719	4,667
107	경기북부	남양주소방서	유	4,136	4,667
108	경기북부	파주소방서	유	4,338	4,538
109	경기북부	구리소방서	유	5,125	4,667
110	경기북부	포천소방서	유	4,540	4,667
111	경기북부	양주소방서	유	4,486	4,667
112	경기북부	동두천소방서	유	4,500	4,667
113	경기북부	가평소방서	유	5,475	4,667
114	경기북부	연천소방서	유	5,993	4,667
115	강원	춘천소방서	유	3,762	4,429
116	강원	원주소방서	유	3,333	4,667
117	강원	강릉소방서	유	3,066	3,232
118	강원	동해소방서	유	2,975	3,475
119	강원	태백소방서	무	3,500	4,667
120	강원	속초소방서	유	3,008	3,674
121	강원	삼척소방서	무	4,000	4,667
122	강원	홍천소방서	무	3,833	4,667
123	강원	횡성소방서	유	4,000	4,667
124	강원	영월소방서	무	3,667	4,333
125	강원	평창소방서	유	3,867	4,667
126	강원	정선소방서	유	3,364	4,164
127	강원	철원소방서	유	3,546	3,962
128	강원	화천소방서	유	3,667	4,667
129	강원	양구소방서	유	3,667	4,667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130	강원	인제소방서	유	3,541	4,208
131	강원	고성소방서	무	3,732	4,232
132	강원	양양소방서	무	3,673	4,339
133	강원	특수대응단	무	4,333	4,667
134	강원	환동해특수대응단	무	4,667	4,667
135	충북	청주동부소방서	유	5,426	5,332
136	충북	청주서부소방서	유	4,644	5,333
137	충북	충주소방서	유	6,811	5,332
138	충북	제천소방서	유	5,776	5,332
139	충북	보은소방서	유	5,221	5,332
140	충북	옥천소방서	유	5,499	5,332
141	충북	영동소방서	유	5,276	5,332
142	충북	증평소방서	유	6,565	5,332
143	충북	진천소방서	무	5,055	5,332
144	충북	괴산소방서	유	5,349	5,332
145	충북	음성소방서	유	6,759	5,333
146	충북	단양소방서	유	4,141	5,333
147	충남	천안동남소방서	유	4,594	5,261
148	충남	천안서북소방서	유	4,035	4,883
149	충남	공주소방서	유	4,327	5,299
150	충남	보령소방서	유	4,147	5,281
151	충남	아산소방서	유	4,513	5,084
152	충남	서산소방서	유	4,507	5,312
153	충남	논산소방서	유	4,719	5,319
154	충남	계룡소방서	유	5,053	5,387
155	충남	당진소방서	유	4,733	5,328
156	충남	금산소방서	유	5,070	5,570
157	충남	부여소방서	유	3,906	5,039
158	충남	서천소방서	유	4,197	5,031
159	충남	청양소방서	유	4,875	5,875
160	충남	홍성소방서	유	4,787	5,320
161	충남	예산소방서	유	4,969	5,302
162	충남	태안소방서	유	5,022	5,522
163	전남	목포소방서	무	3,420	4,420
164	전남	여수소방서	무	4,333	4,667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165	전남	순천소방서	무	4,000	4,667
166	전남	나주소방서	무	3,333	4,667
167	전남	광양소방서	무	3,685	4,435
168	전남	담양소방서	무	3,667	4,667
169	전남	보성소방서	무	3,667	4,667
170	전남	해남소방서	무	3,944	4,444
171	전남	영암소방서	무	4,889	4,667
172	전남	영광소방서	무	4,000	4,667
173	전남	화순소방서	무	3,856	4,522
174	전남	강진소방서	무	4,000	4,667
175	전남	무안소방서	무	3,667	4,667
176	전남	고흥소방서	무	3,848	4,388
177	전남	함평소방서	무	4,000	4,667
178	전남	장성소방서	무	4,133	4,667
179	전남	장흥소방서	유	4,000	4,667
180	전남	완도소방서	무	4,000	4,667
181	전남	신안소방서	무	4,333	4,667
182	전남	진도소방서	무	3,746	4,413
183	전남	곡성소방서	무	4,000	4,667
184	전남	구례소방서	무	4,500	4,667
185	전남	119특수대응단	무	3,088	4,667
186	전북	전주완산	무	3,749	4,300
187	전북	전주덕진	무	2,829	2,850
188	전북	군산소방서	무	4,213	4,527
189	전북	익산소방서	무	4,785	5,732
190	전북	정읍소방서	무	4,344	4,069
191	전북	남원소방서	무	3,015	3,074
192	전북	김제소방서	무	3,150	3,291
193	전북	완주소방서	무	6,946	6,591
194	전북	진안소방서	무	3,316	3,074
195	전북	무주소방서	무	2,907	2,935
196	전북	장수소방서	무	4,171	4,793
197	전북	임실소방서	무	3,282	3,624
198	전북	순창소방서	무	2,829	2,829
199	전북	고창소방서	유	4,662	4,472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200	전북	부안소방서	무	3,627	4,458
201	경북	포항북부소방서	유	5,583	5,583
202	경북	포항남부소방서	유	4,763	4,763
203	경북	경주소방서	유	4,362	4,362
204	경북	김천소방서	유	4,301	4,301
205	경북	안동소방서	유	4,882	4,882
206	경북	구미소방서	유	4,102	4,102
207	경북	영주소방서	유	4,699	4,699
208	경북	영천소방서	유	5,507	5,507
209	경북	상주소방서	무	4,189	4,189
210	경북	문경소방서	유	4,407	4,407
211	경북	경산소방서	유	4,403	4,403
212	경북	의성소방서	유	4,785	4,785
213	경북	청송소방서	무	4,383	4,383
214	경북	영덕소방서	유	5,372	5,372
215	경북	청도소방서	유	4,445	4,445
216	경북	고령소방서	유	4,821	4,821
217	경북	성주소방서	유	5,381	5,381
218	경북	칠곡소방서	유	4,779	4,779
219	경북	예천소방서	무	4,331	4,331
220	경북	봉화소방서	유	4,336	4,336
221	경북	울진소방서	유	4,469	4,469
222	경북	119특수대응단	무	5,576	5,576
223	경북	산불119특수대응 단	무	4,844	4,844
224	경남	진주소방서	유	4,501	5,635
225	경남	통영소방서	유	5,075	5,442
226	경남	사천소방서	유	4,982	5,516
227	경남	김해동부소방서	유	4,882	5,515
228	경남	김해서부소방서	유	5,371	5,704
229	경남	밀양소방서	유	5,535	5,735
230	경남	거제소방서	유	3,916	5,649
231	경남	양산소방서	유	4,719	5,752
232	경남	의령소방서	유	4,894	5,294
233	경남	함안소방서	유	3,628	5,462

연번	시도 본부	소방서	영양사 (유무)	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	II. 1식 평균 급식 단가(원)
234	경남	창녕소방서	유	3,837	5,503
235	경남	고성소방서	유	4,532	5,699
236	경남	남해소방서	유	4,902	5,435
237	경남	하동소방서	유	5,117	5,650
238	경남	산청소방서	유	4,727	5,494
239	경남	함양소방서	유	4,769	5,635
240	경남	거창소방서	유	3,217	5,251
241	경남	합천소방서	유	4,680	5,547
242	제주	본부(항공대)	무	5,667	5,667
243	제주	제주소방서	유	4,436	4,436
244	제주	서귀포소방서	무	4,675	4,675
245	제주	서부소방서	유	4,578	4,578
246	제주	동부소방서	무	7,912	7,912
247	창원	창원소방본부	유	3,000	4,667
248	창원	의창소방서	무	2,833	4,667
249	창원	성산소방서	유	3,000	4,667
250	창원	마산소방서	유	2,867	4,667

참고2

소방관서 급식 지원 조례

(자료: 소방청)

○ 급식 조례 제정 9개 시도, 관련 조문 5개 시도

- (조례 제정) 전남(20.6.18.), 부산(21.1.13.), 충북(21.12.31.), 충남(23.3.10.) / 경기(24.1.10.), 전북(24.1.18.), 경북(24.4.1.), 울산(24.7.1.), 인천(24.9.25.)

- (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內 급식 지원 조문) 대구, 대전, 경남, 제주, 강원

○ 시도별 조례 비교

시도	주요 내용
전남	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전라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4조(지원)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2.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
부산	제4조(양질의 급식환경 조성) 시장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,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5조(사업)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1.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,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.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
전북	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전북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4조(지원)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2.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
인천	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소방기관의 근무자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 2.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.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4.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대전	「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등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」 제10조(복지 증진 사업)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3. 소방관서 구내식당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원 가.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개선 나. 소방관서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다. 소방관서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 라.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

참고3

전국 소방관서 급식 운영 개선방안

(자료: 소방청)

□ 급식 환경

-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외부에서의 식사가 곤란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필요
 - ※ 1인당 8~14만원 거출 / 1식 식재료비 평균 5,324원 / 시도별 예산 및 인력 지원
 - ※ 공무원에게 정액급식비로 월 14만원을 급여일에 지급 (공무원수당 규정)
- 14개 시도에서 급식 지원 관련 조례* 마련, 그 외 시도는 조례 없이 예산 편성 후 지원
 - * (급식 지원 조례 제정) 9개 시도 : 전남(20.6.18.), 부산(21.1.13.), 충북(21.12.31.), 충남(23.3.10.) / 경기(24.1.10.), 전북(24.1.18.), 경북(24.4.1.), 울산(24.7.1.), 인천(24.9.25.)
 - (소방 보건의안전 및 복지 조례에 반영) 5개 시도 : 대구, 대전, 경남, 제주, 강원

□ 지원 내용

- 대부분 시도에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(충북, 전북, 제주 제외), 일부 시도에서는 식재료비 일부분 지원 중
 -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식단 질 향상, 개인별 식비 부담 경감

<2024. 8월 기준>

급식시설 운영 개소			지원 사항	
합 계	외부 위탁	자체운영	부식비 예산편성	조리인력 예산지원
1,104개소	114개소	990개소	106억원	708명

□ 문 제 점

- 통일적·합리적 지원 기준 부재, 각 시도별 조리인력·예산 등 차이

□ 향후계획

- (전문가 의견) 소방관서 급식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
 - ※ 전국 소방관서 급식 환경 분석, 합리적·표준화된 지원기준 마련으로 근무여건 개선
- (조례 마련) 급식 지원 조례(조문) 권고안 마련 ⇒ 시도 조례 제·개정

참고 4

소방관서 급식 지원 권고(안)(3조1교대 기준)

(자료: 소방청)

1 권고안

① 영양사, 조리인력 등 배치(「식품위생법」, 같은 법 시행령)

- 집단급식소(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)는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

영양사 배치 기준

식품위생법

제52조(영양사)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(營養士)를 두어야 한다.

식품위생법 시행령

제2조(집단급식소의 범위)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.

② 소방관서 급식비 지원 기준

- 조리인력 인건비는 100% 예산으로 지원
- 부식비는 월 30식을 기준으로 지원

교대근무자

◦ 부식비 : 보수에 포함되어 지급된 정액급식비*로 각출 + 식수(월 30식) 기준, 월 10식에 해당하는 부식비 지원금액으로 총당

※ 월 30식(30일×3식 ÷ 3팀) / 근무일 중식, 석식, 익일 조식

※ 일근자는 정액급식비*, 매식비 등 활용

* 정액급식비 :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중

③ 자격보유자를 조리인력으로 배치, 급식시설 및 위생 등 조리환경 개선

2 향후계획

- (연구용역 실시) 소방청에서 소방관서 급식실태 분석 및 개선 연구용역 추진('25년 예정)
 - ※ 전국 소방관서 급식 환경 분석, 합리적·표준화된 지원기준 마련으로 근무여건 개선
- (가이드라인 마련) 용역 결과를 반영, 급식 환경, 지원방안 등 마련